

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2-215호
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예정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며, 2022. 12. 2.일까지 예금을 찾아가지 않으실 경우 국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리오니 지급기한 전 통장과 인감 및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국고귀속 예정 안내문 반송 안내 -

○ 우편물 반송 대상자 : 붙임 참조(지급안내문 338명, 소액이체 안내문 303명)

※ 소액이체 안내문 반송 대상자는 예금주의 타 활동계좌로 이체 예정

○ 국고귀속 예금 수령 방법

- 본인 수령시 : 통장, 인감 또는 서명, 실명확인증표(ex: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대리인 수령시 : 통장, 인감, (인감날인한)위임장,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,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

- 미성년자명의 예금 : 신청인 실명확인증표, 가족관계증명서, 미성년자 기본증명서(상세 또는 특정), 지급동의서(부모 중 1인 방문 시), 통장, 도장

※ 통장이 없으신 경우에도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시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지급이 가능합니다.

그리고 대리인 지급의 경우 비밀번호를 알아야 지급 가능

※ 구비서류 : 지급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

○ 지급우체국 : 전국 우체국

○ 지급기한 : 2022. 12. 2.일까지

우 정 사 업 본 부